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2. 20 선고 2023가소325102 판결 [렌탈료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종결 2023. 12. 20.

판결선고 2023. 12. 20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442,199원과 이에 대한 2023. 6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판사 김인택

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